



도색 공사업체를 위한 정보

갱신 — 2016년 8월

PaintCare의 페인트 관리 프로그램은 공사업체들이 사용 후 남은 페인트를 적절히 처리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페인트 제조업체들은 페인트 관리 법규에 따라 더욱 편리하게 페인트를 처리하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 후 남은 페인트를 가정 및 기업에서 무료로 가져갈 수 있는 장소를 특정 주 및 컬럼비아 특별구("PaintCare 주") 전역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건축용 페인트(주택용 페인트, 스테인, 바니시) 판매 수익금의 수수료로 운영됩니다.

페인트 관리

이러한 페인트 관리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은 페인트 폐기물을 감소시키고 사용 후 남은 페인트를 관리할 수 있는 친환경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American Coatings Association (ACA)이 설립한 비영리 조직인 PaintCare에 의해 개발 및 운영됩니다.

PaintCare는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코네티컷, 컬럼비아 특별구(2016년 11월 1일부터), 메인, 미네소타, 오리건, 로드아일랜드, 버몬트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및 자금 조성

주 법규에 따라 제조업체는 주에서 판매된 모든 건축용 페인트의 도매가격에 수수료("PaintCare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제조업체가 PaintCare에 지불한 수수료는 페인트의 적절한 처리, 재활용, 운송을 위해 페인트 배출 구역을 조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수수료는 소비자 교육 및 프로그램 관리에도 사용됩니다.

주 법규는 유통업체와 소매업체가 주에서 판매하는 페인트의 판매 가격에도 PaintCare 수수료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과금은 다음과 같이 해당 주에 따라 다릅니다.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코네티컷, 메인, 미네소타, 오리건 및 로드아일랜드:

- \$ 0.00 — 1/2파인트 미만
- \$ 0.35 — 1/2파인트 이상, 1갤런 미만
- \$ 0.75 — 1갤런
- \$ 1.60 — 1갤런 이상 최대 5갤런까지

컬럼비아 특별구(2016년 11월 1일부터 유효):

- \$ 0.00 — 1/2파인트 미만
- \$ 0.45 — 1/2파인트 이상, 1갤런 미만
- \$ 0.95 — 1갤런 이상 2갤런 미만
- \$ 1.95 — 2갤런 이상 최대 5갤런까지

버몬트:

- \$ 0.00 — 1/2파인트 미만
- \$ 0.49 — 1/2파인트 이상, 1갤런 미만
- \$ 0.99 — 1갤런
- \$ 1.99 — 1갤런 이상 최대 5갤런까지



공사업체 권장사항

견적 산출

공사업체는 작업 견적을 산출할 때 PaintCare 수수료를 고려하여야 하며, 공급업체와 확인하여 페인트 제품에 대한 견적에 수수료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합니다.

고객에게 수수료 청구

PaintCare는 도색 공사업체가 지불한 PaintCare 수수료를 고객에게 청구하도록 권장합니다. 공사업체는 또한 해당 수수료가 견적서에 포함될 것이라는 사실을 고객에게 알려야 합니다.

페인트 배출 구역

PaintCare는 90~95% 주 거주민이 15마일(24.14킬로미터) 이내에서 페인트 배출 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PaintCare 주 전역에 걸쳐 페인트 배출 구역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배출 구역은 페인트 판매점입니다. 기타 장소로는 폐기물 처리시설, 재활용 센터, 정부 지원 가정 유해 물질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배출 구역으로 참여하는 것은 자유재량에 따릅니다. 가까운 배출 구역을 찾아보려면 프로그램 웹 사이트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전역에 페인트 배출 구역이 위치해 있어 누구든 사용 후 남은 페인트나 사용하지 않는 페인트를 상시로 가져다 놓을 수 있습니다. PaintCare를 실시하는 주의 공사업체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창고를 깨끗이 비우고 페인트를 재고로 쌓아두는 일이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업체들은 사용하지 않는 오래된 페인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냐고 고객들이 물어올 때 페인트 배출 구역을 추천할 수 있어 만족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업장의 페인트 배출 구역 사용

매달 220파운드(99.79킬로그램) 미만의 유해 물질*을 생산하는 사업장은 사용 후 남은 수성 및 유성 페인트(유성 페인트의 경우 수량 제한)를 배출 구역에 가져다 놓을 수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이나 가정 유해 물질 프로그램은 모든 사업장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추가적인 제한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이용하기에 앞서 먼저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매달 220파운드(99.79킬로그램) 이상의 유해 물질을 생산하는 사업장은 수성 페인트 제품에 대해서만 PaintCare의 배출 구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유성 제품은 배출할 수 없습니다.

**220파운드(99.79 킬로그램)는 페인트 약 20~30갤런(75.71~113.56리터) 유해 물질 생산량을 계산할 때 유성 페인트는 포함하지만(법에 따라 유해 물질로 규정), 라텍스 페인트(및 기타 수성 페인트)는 월 총량 220파운드(99.79킬로그램)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대량 픽업 서비스

재활용할 수 있는 최소 300갤런(1135.62킬로그램)의 페인트가 있다면 PaintCare에 무료로 픽업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나 예약 요청은 웹 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색 공사업체를 위한 정보

갱신 — 2016년 8월

허용되는 제품

PaintCare 배출 구역에 허용되는 제품은 판매 시 PaintCare 수수료가 책정된 제품입니다. PaintCare 제품에는 5갤런(18.93킬로그램) 이하의 용기에 담긴 내부 및 외부 건축용 코팅제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에어로졸 제품(스프레이 캔), 산업 관리(Industrial Maintenance, IM), 주문자 생산 방식(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OEM), 특수 코팅제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PaintCare 허용 제품

- ◆ 내부 및 외부 건축용 페인트: 라텍스, 아크릴, 수성, 알키드, 유성, 에나멜(텍스처 코팅제 포함)
- ◆ 갑판 코팅제, 바닥 페인트
- ◆ 프라이머, 실러, 언더코터
- ◆ 스테인
- ◆ 웰락, 래커, 바니시, 우레탄
- ◆ 방수 콘크리트/석조/나무 실러 및 용액(타르나 비튜멘 제품 제외)
- ◆ 메탈 코팅제, 녹 방지제
- ◆ 운동장 및 잔디밭 페인트

PaintCare 비허용 제품

- ◆ 페인트 시너, 미네랄 스피릿, 용제
- ◆ 에어로졸 페인트(스프레이 캔)
- ◆ 자동차 및 해양 페인트
- ◆ 미술 및 공예 페인트
- ◆ 코킹재, 에폭시, 글루, 접착제
- ◆ 페인트 첨가제, 착색제, 틴트, 레진
- ◆ 목재 방부제(살충제 포함)
- ◆ 지붕 패치 및 수리재
- ◆ 아스팔트, 타르, 비튜멘 제품
- ◆ 2가지 성분의 코팅제
- ◆ 갑판 클리너
- ◆ 교통 및 도로 마킹 페인트
- ◆ 산업 관리(IM) 코팅제
- ◆ 주문자 생산 방식(OEM)(판매 회사 적용 페인트 및 마감재)